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31 선고 2021가단2112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91483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31 선고 2021가단211296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김길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8. 17.

판 결 선 고 2021. 8. 3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10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1. 1. 26. 접수 제4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, C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.

나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535호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4. 18.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,4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8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2) C 등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454호로 항소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19. 12. 19. C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3) C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225008호로 상고하였으나, 대법원은 2020. 8.

14.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하였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

1) D은 2017. 10. 17. C,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6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거래가액 530,000,000원)를

마쳐주었다.

2) 피고는 2020. 10. 7.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308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/2 지분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2020. 10. 7.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10. 12.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하여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.

3)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로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, 2020. 10. 27.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,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.

4) 한편 피고는 2020. 10. 7.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027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12. 16.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.

5)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1. 1. 26. 접수 제4398호로 2020. 10. 20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지분 전부 이전등기, 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고, 이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.

라. C의 채무초과상태

C은 2020. 10. 7.경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3,400,000,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,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, 시가 800,000원 상당의 경주시 F콘도미니엄 G호 지분, 시가 3,090,000원 상당의 라세티 자동차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9 내지 12호증, 을 제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0. 10. 7.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
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채권자가 채무자를
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
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
없으므로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

1)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
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, 그
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,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
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
98두15177 판결 등 참조).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
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
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
있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
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, C은 피고가 C을
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를 제기한 날인 2020. 10. 7. 피고에게 C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
중 1/2 지분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 530,000,000원 중 435,000,000원이 2017. 10. 17. 피고의 계좌에서
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435,000,000원 중 52,000,000원은 C으로부터 받은 것이고,
65,000,000원은 H으로부터 받은 것이다. 피고는 C, H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가 투자한 돈을
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다.

- ② 위 435,000,000원 중 I로부터 받은 320,000,000원은 C, 피고가 거주하던 하남시 J건물, K호 전세금을 반환받은 것이다. 피고는 위 전세금이 피고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 마련한 돈으로 L아파트, M아파트를 순차로 사고팔며 남은 돈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는 친정에서 빌렸다는 돈의 금융자료, 위 전세금과 관련한 전세계약서 내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, 피고와 C의 결혼생활 중 C은 소득이 있었으나, 피고에게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다. 설령 위 435,000,000원의 출처가 피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위 자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거나, C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 530,000,000원과 위 435,000,000원의 차액 95,000,000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.
-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기진석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하남시 동[도로명주소] 경기도 하남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평지붕 25층

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455.07㎡

2층 433.88㎡

3층 433.88㎡

4층 433.88㎡

5층 433.88㎡

6층 433.88㎡

7층 433.88㎡

8층 433.88㎡

9층 433.88㎡

10층 433.88㎡

11층 433.88㎡

12층 433.88㎡

13층 433.88㎡

14층 433.88㎡

15층 433.88㎡

16층 433.88㎡

17층 433.88㎡

18층 433.88㎡

19층 433.88㎡

20층 433.88㎡

21층 433.88㎡

22층 433.88㎡

23층 433.88㎡

24층 433.88㎡

25층 433.88㎡

지2 84.51㎡

지1 84.5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(고유번호:)

건물번호:

건물내역: 철근콘리트구조 74,8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경기도 하남시 대 57876.8㎡

끝.

